

「핀테크혁신펀드 6차 (Next Finance)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「핀테크혁신펀드 6차(Next Finance)」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위탁운용금액 : 총 380억원 이내(핀테크혁신펀드 및 공동출자자 포함)

출자방식	최대 출자총액	참조
모펀드 제안방식(블라인드펀드)	300억원	p.1
운용사 제안방식(블라인드펀드 및 프로젝트펀드)	80억원	p.6

1. 모펀드 제안방식(블라인드펀드)

기본항목

항 목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
출자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 300억원 이내 출자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리그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자총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사 수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운용사별 출자금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펀드별 최소결성금액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출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초기투자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억원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억원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.0%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Follow-on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40억원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0억원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억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.0% 이내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* 본 공고에 따라 최종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공동출자자의 선정 및 승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며,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출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※ 리그간 중복 지원은 허용하지 않음</p>	리그구분	출자총액	운용사 수	운용사별 출자금액	펀드별 최소결성금액	출자비율	초기투자*	60억원 이내	1개	60억원 이내	100억원	60.0% 이내	Follow-on	240억원 이내	2개	120억원 이내	400억원	30.0% 이내
리그구분	출자총액	운용사 수	운용사별 출자금액	펀드별 최소결성금액	출자비율														
초기투자*	60억원 이내	1개	60억원 이내	100억원	60.0% 이내														
Follow-on	240억원 이내	2개	120억원 이내	400억원	30.0% 이내														
출자대상 투자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<p style="margin-top: 10px;">※ (공통사항)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</p>																		
운용사 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,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(사전협의 요망) ○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,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최소기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○ 제안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규약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 																		

항 목	세부내용
운 용 사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
접수일시	○ 2025년 5월 20일(화) 10:00 ~ 16:00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(7. 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 ○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심사결과 발표	○ 2025년 6월
펀 드 결성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* 단, 부득이한 경우 한국성장금융 협의하에 3개월 이내 연장 가능

□ 투자대상

- 투자대상은 국내 중소·중견기업* 및 비상장 해외기업으로 투자기간 내 아래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의무투자비율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

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하되,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

<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투자비율 >

구 분	초기투자 리그	Follow-on 리그											
①핀테크기업	○ 초기단계 기업에 60억원 이상	○ 사업화단계 기업에 132억원 이상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예비 핀테크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인정금액은 MIN[의무투자금액*1/3, 투자금액*30%]이며,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핀테크 기업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투자금액의 100%를 주목적 투자금액으로 사후 인정 												
	< 예시 : 10억원 투자시 인정금액 >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시 점</th> <th>기업 구분</th> <th>주목적 투자 인정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투자 당시</td> <td>예비 핀테크기업</td> <td>3억원 = 10억원 * 30%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 style="background-color: #e0e0e0;">↓ 사업영역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으로 전환</td> </tr> <tr> <td>투자 이후 (결성일 ~ 5년 내)</td> <td>핀테크기업</td> <td>10억원 = 10억원 * 1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시 점	기업 구분	주목적 투자 인정금액	투자 당시	예비 핀테크기업	3억원 = 10억원 * 30%	↓ 사업영역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으로 전환			투자 이후 (결성일 ~ 5년 내)	핀테크기업
시 점	기업 구분	주목적 투자 인정금액											
투자 당시	예비 핀테크기업	3억원 = 10억원 * 30%											
↓ 사업영역 확대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으로 전환													
투자 이후 (결성일 ~ 5년 내)	핀테크기업	10억원 = 10억원 * 100%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구주 및 예비 핀테크기업 투자는 전체 의무투자금액의 1/3 한도(초기투자리그 20억원, Follow-on 리그 44억원)에서만 허용함 													
②우수기술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 기술기업에 누적투자금액의 80% 이상 * 펀드 결성시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위한 규약상 조건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음 												

주목적 투자대상 정의	
○ 핀테크기업	금융위원회에서 정한 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(이하 "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")상 '핀테크기업'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,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에서 발간한 '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'상 명시된 해당산업 영위기업(신·구주 동일라운드 투자 구주도 의무투자금액*1/3 한도 내 인정) * 핀테크지원협의체 핀테크랩 등 소속 시 협의 하 인정 가능(투자 이후도 포함)
○ 예비 핀테크기업	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상 핀테크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핀테크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
○ 초기단계 기업	Seed/Early 단계부터 Series-A 단계까지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도약기업
○ 사업화단계 기업	초기단계 투자를 유치한 기업 또는 투자 전 기업가치(Pre-Money value) 200억원 이상 기업
○ 우수 기술기업	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(T15)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(단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등의 주식연계채권 투자는 주목적투자에서 제외함)

□ 주요 출자조건

항 목	세부내용			
	초기투자 리그		Follow-on 리그	
운 용 사 의 무 출자비율	최소결성금액의 2.0% 이상		약정총액의 1.0% 이상	
	* 공동 운용의 경우 합산하여 의무 출자비율 이상 출자(각 운용사 모두 출자에 참여하여야 함) ** 「상법」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운용사인 경우,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※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			
존속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			
투자기간	○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			
납입방식	○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			
운용보수	○ 관리보수 : 연 2% 이내 * 결성일~2년 : 약정총액 기준 / 2년 이후~존속기간 : 투자잔액 기준 ○ 성과보수 : 기준수익률(IRR 6% 이상) 초과수익의 20% 이내 ※ 상기 운용보수 내에서 제시하되, 최다출자자 공모사업 매칭시 자율제안(상향) 가능			
운 용 사 인센티브	○ 운용사는 아래 인센티브 요건 충족시 핀테크혁신펀드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일부를 달성률에 따른 비율만큼 부여받음(각 실적비율은 0.5%p단위로 산정) ① 핀테크기업 초과 투자실적 [(핀테크기업 투자금액/최소결성금액)-의무투자비율]			
	초과 투자실적 비율	10%p 이상	15%p 이상	20%p 이상
	인센티브 지급비율	2% 이상	3% 이상	5%
	② 핀테크기업 협력실적 (핀테크기업 협력실적 투자금액 합계/총 투자금액) * 핀테크지원협의체 소속기관과의 협력실적 및 K-fintech30, 해외진출, 딥테크활용 등 정책지원 실적 (세부사항은 한국성장금융과 협의)			
	협력실적 비율	20% 이상	30% 이상	40% 이상
	인센티브 지급비율	2% 이상	3% 이상	5%

항 목	세부내용
핵심 운용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핵심운용인력 : 총 2인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운용의 경우, 운용사당 1인 이상 참여 ○ 자격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경력 3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이 참여 - 전체 핵심운용인력의 투자경력 평균이 4년 이상일 것 ※ 투자관련 경력구분 세부 내역은 제안서 제출 양식(엑셀) 참조 ○ 핵심운용인력은 출자대상 투자기구의 근거법령에서 요구하는 펀드운용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○ 핵심운용인력 중 1인은 투자기간 만료 또는 약정총액의 60%이상이 투자 되기 전에는 다른 펀드의 핵심운용인력*으로 신규 참여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해당 명칭에 한정하지 않으며, 핵심운용인력에 준하는 지위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 ○ 핵심운용인력은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고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펀드의 평균 출자약정액 합산금액*은 1,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(펀드별 약정총액 / 펀드별 핵심운용인력의 수)의 합산금액 ※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○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
출자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개인출자자(운용사의 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가 책임 운용 강화 등 펀드 운용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해외출자자(해외출자자의 국내법인 포함) 및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 ○ 타 정책자금과의 매칭 가능하며, 해당기관 및 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
수탁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최종 펀드 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
회계감사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
펀드 전자보고 시스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하여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

항 목	세부내용
기 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외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 ○ 한국성장금융의 내규, 규약을 우선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성장금융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(편입가능 자산 유형)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규약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○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출자조건(주목적투자분야 및 비율, 보수구조 등) 등에 대한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, 펀드 조성목적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 가능 ○ 자펀드 결성시, 본 펀드 출자기관이 직·간접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, 해당 출자기관과 협의하여 출자금액 조정 가능 ○ 최다출자자 우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 사업이 최다출자자 공모사업에 매칭출자하는 경우, 최다출자자의 출자조건을 우선 적용 가능(한국성장금융과 사전 협의 필요) -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(예 : 관리보수 인하) 가능 - 단, 주목적 투자분야, 비율 등 펀드 조성목적에 훼손하는 조정 불가 ○ 주목적 투자대상이 추가되는 출자기관과 매칭시 사전에 협의 후 지원할 것 ○ 해외투자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용사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투자는 투자금액의 [20%] 이하로 제한하며,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음 *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5호 라목 준수 필요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해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과정에서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

2. 운용사 제안방식(블라인드펀드 및 프로젝트펀드)

□ 기본항목

항 목	세부내용
출자계획	○ 총 80억원 이내 출자
출자대상 투자기구	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○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* 집합투자기구, 투자조합 *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였을 것 ※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※ (공통사항)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의 사유로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
운용사 신청자격	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설립된 법인 ○ 2개 이상의 운용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, 펀드 운용을 위한 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함 ○ 제안운용사에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
운용사 선정방법	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* 한국성장금융 : www.kgrowth.or.kr
접수일시	수시 접수
심사결과 발표	수시 선정
펀드 결성시한	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
□ 주목적 투자대상

블라인드펀드	프로젝트펀드
○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 및 국내 금융 기관과 연계 가능한 해외 핀테크기업 발굴을 중심으로 개별 협의하여 결정	○ 국내 핀테크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중심으로 개별 협의하여 결정

□ 주요 출자조건

- 주요 출자조건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 및 모펀드 제안방식(블라인드펀드) 출자 조건의 범위 수준에서 제안심사 시 포함하여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성장 금융과 협의하여 결정

3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(미해소),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
 - 1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관주의
 - 2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을 제외한 펀드운용 관련 법령위반 등으로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경고·시정명령·업무정지
- ※ 다만, 법령위반 등 제재내역이 본 펀드 운용부서, 운용사의 임직원 등과 관련성이 적은 경우는 선정 배제 사유에서 제외 가능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 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(직원인 경우) 또는 문책경고(임원인 경우)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한국성장금융의 운용 펀드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을 말함)에 미달하는 경우
- 한국성장금융이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 등 펀드 관련 계약을 포함, 이하 동일)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4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한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투자기간 종료일 또는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,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에서 배제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함
- 선정된 운용사가 펀드 운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, 고의적·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3년 이하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
□ 기 타

- 접수일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한국성장금융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**2024. 12.31.**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

5. 선정절차 및 일정 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제안(구술)심사 → 최종선정

□ 선정 일정

일정	내 용	비 고
'25. 5. 20.(화)	제안서 접수	10:00~16:00
'25. 6월	최종 선정	개별 통지
'25. 12월	펀드 결성 완료	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지원방법 * 모펀드 제안방식에 한함

- 한국성장금융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 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대면 제출*
- * 제출서류 및 관련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(관련 양식은 출자 설명회 일자까지 별도 공지 예정)
- 제안(구술)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를 제출

출자 설명회

- 일시 : 2025년 4월 21일(월) 14:00
- 장소 : 한국성장금융 대회의실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, SK증권빌딩 11층)
- * 출자 설명회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
7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- 접수처 :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SK증권빌딩 11층)
- 문의방법 : 한국성장금융 성장금융2팀 (02-2090-9164, 9154)
E-mail : shk@kgrowth.or.kr, yoonjh@kgrowth.or.kr

2025년 4월 7일

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